

2004년 농기업활성화 방인의 일환으로 농업경영체 관련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전업농과 농업법인이 경영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에 자본, 기술 및 인력이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농업의 규모화 및 전문화가 가능하도록 농업법인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국회의 법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농업법인관련 세제와 제도개선내역 및 축산업 소득세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농업법인의 세제감면 및 관련제도 해석

1.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상 지원내역

가. 소득에 대한 감면(2004년 개정세법 포함)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소득을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농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작물재배업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액면제하고,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부과를 유예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하여 세부담을 전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농업소득세 대상이 되는 작물재배를 통하여 얻은 소득에는 벼, 과수, 특용작물 등이 해당되며,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업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국세인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농업법인이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농업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은 것은 세법 적용을 잘못된 것이며, 영농조합의 경우에는 축산업소득에 대하여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조합원 1인당 연간 12백



김 태 용 공인회계사
미래회계법인 농업사업팀



세 무

만원 감면(조합원이 5명인 경우 연간 6천만원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함)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축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소득에 대하여 50%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산출세액의 10%~15%)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소득에 대하여 전액면제 •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조합원 1인 당 연간 12백만원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66조) 최저한세 적용이 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소득에 대하여 전액면제 •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년도 부터 5년간(2004년 창업한 경우는 3년간) 법인세 50%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에 준하여 감면함. (조세특례제한법 66조) <법 개정 내용> 농업소득에 대한 감면은 2004년 법인세까지 최저한세적용대상이 되나 2004년 법개정에 의하여 2005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농업소득에 대하여서는 법인세 전액 면제 가능함.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대통령이 정한 작물재배로 인하여 소득이 있는 자(법인, 개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조합원이 각 지분별로 배분 받거나 배분 받을 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 있음. <지방세법 부칙 > 제5조(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3장 제4절의 규정(제197조 내지 제214조)은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2004년도 농업소득세분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사법인이 납세의무가 있음. 따라서 과세표준 80백만원 초과 시 주민세포함 44%세율 적용되어 세부담이 과도함. <법률개정번호교과> 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4년부터 농업소득세과세가 중단됨으로 2004년도 농업소득세는 납부의무가 없으나 2004년도분 법인세 신고시에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됨.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작물재배업이 추가됨으로 인하여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이하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최저한세(10%)가 적용됨.

나. 양도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의 조합원이 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시 농지, 초지에 대하여서는 조합원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기타의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아 농업법인설립시 개인이 운영하는 양돈장, 전통식품공장 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세의 부담을 하였으나 양도세이월과세(출자자가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법인이 출자자가 출자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출자자에게 양도세를 부과)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 양돈장을 현물출자하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양도세의 부담을 하지 않게 되어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설립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배당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농업소득은 전액면제되며 축산업소득 등의 경우에는 조합원당 연간 12백만원이 감면되며, 12백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에 대하여서는 5%의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서는 조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이 배당시점에 원천징수 함으로써 조합원의 세무부담이 완결되게 됩니



구 분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양도소득세 면제	<p>법인에 농지 및 초지 현물출자 시 양도세면제 단, 3년 내 출자지분을 양도 시 세액을 추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제 66조 제 4항) 주) 농지 및 초지에 한하여 양도세가 면제됨으로 일야, 대지 등을 현물출자 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됨으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이월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양도세가 법인에서 현물 출자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이월이 가능하게 됨.</p>	<p>좌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2항)</p>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설>	<p>대통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게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는 제외)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66조 7항></p>	<p>대통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게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는 제외)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68조3항></p>
배당소득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소득에 대한 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전액면제 •농업외소득 연간 조합원당 12백만원 면제, 12백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5%저율분리과세 되며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음. <p>주)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세무의무가 종결되는 제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음. <p>주민세포함 15.4% 원천징수 주)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4천만원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2003년까지는 주주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했으나, 2003년 12월 30일 법개정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됨(분리과세). 따라서 비농업인의 출자금에 대하여 배당을 원활하게 되었습니다.</p>

다. 다만, 농업회사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어 배당지급금액의 15.4%을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경영 및 농작업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축산업에서의 위탁가축사육비는 농작업대행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아 가축을 위탁 받아 사육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농가가 부업수준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사업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법인의 경우에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축산분야의 부가가치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사료법에 의한 사료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2002년도부터 도입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에 의하여 축산업용 비닐하우스 파이프, 부직포, 종이재질의 포장박스에 대하여서는 구입시점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품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기 위하여서는 매 분기 종료일(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농업협동조합에 환급신청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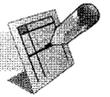
구분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부가가치세면제 <조특법 제106조 1항 3호>	농업경영 및 농작업대행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작업대행, 선별, 포장구역은 면제되나 운반, 저온저장수수료, 위탁사육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좌 동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조세특례제한법 105조의 2>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대상품목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발작물 피복용에 한한다)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7. 연초건조용 차광망 8.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9. 농업용 배지(양액·버섯재배용에 한한다)	좌 동
부가가치세영세물적용 <조세특례제한법 105조 1항 5호>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농업용기계, 축산업용기자재, 사료법에 의한 사료, 임업용기자재 <신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이 정한것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키토산, 목초액, 천적 등>	좌 동

농업법인 및 개인축산농가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및 면제

농업법인은 설립시 자본금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하나 설립 이후의 자본금 증자에 대하여서는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농업법인이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50% 감면되며, 신규 창업한 농업법인이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전액면제(신설: 2005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되게 되어 신규로 창업하는 경우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부담이 없게 되었습니다.

구분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경감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0% 경감하고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경감. 단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 <지방세법 266조 7항>	좌 동 주) 종합토지세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종합토지세도 50%경감됩니다.
설립등록세 면제 <지방세 266조 7항 3호>	법인의 설립등기 시 자본금에 대한 등록세 면제	좌 동 주) 유상증자시에는 면제되지 않음
취득세·등록세 면제 <신설>	농업법인이 창업시 2년 내 취득하는 농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전액면제 2005년 1월1일 이후창업·취득하는 농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적용	좌 동



2.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역

가. 농업회사법인 진입제한 완화

주식회사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전문경영인의 도입과 도시자본의 조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업회사법인설립요건으로 규정한 농업인의 출자지분비율이 25%초과인 경우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농지법 개정안 확정 발표(04. 10. 26일 국무회의 의결 후 확정 발표)

- 2005년 1월 5일 현재 법개정 되지 않음(국회 상정됨)

현	행	개	정	안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요건 제한 ① 대표이사가 농업인 ②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1/2 이상이 농업인 ③ 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2 이상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전면 허용(①, ②, ③요건 폐지)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면 농지소유 허용 <전문경영인의 농업법인 경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집행이사 제한 규정삭제 및 농업인 지분완화> 총지분의 1/2에서 1/4로 축소		

나. 농업법인에 대한 불리한 지원조건 정비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조건 중 불합리한 조건을 정비하여 2005년부터는 조합원 5인 이상인 경우에 지원이 되며, 조합원 1인의 지분출자한도를 폐지하여 영농조합법인이면 정책자금지원 및 국고보조에 차별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농업법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법인의 부대사업에 주말농원 등의 관광사업, 음식점업을 추가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농업법인의 사업영역이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농업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기회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곤란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 12 조)		• 정책자금 지원요건완화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이 57구 이상'을 조합원 5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한도를 완화(총출자액의 25% 이하--폐지) • 농업법인의 부대사업 제한 완화 - 주말농원, 관광농원 등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자기생산농산물을 활용한 음식점 등 소득사업을 허용		

3. 축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가. 축산업 소득세 과세체계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농가부업규모까지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농가부업규모초과 시에는 초과소득금액에 대하여 농가부업규모소득(연간 12백만원)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됩니다.

농가가 축산만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사유두수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초과



세무

소득에 대한 12백만원의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가부업규모 가축사육두수 산정시 젓소와 소의 경우 육성우는 2마리를 한 마리로 하며, 돼지, 산양 등의 경우에는 어린가축은 사육두수 산정에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농가는 매월 말 현재의 정확한 사육두수를 파악할 수 있는 사육두수현황표를 작성·비취하여야 합니다.

농가부업 소득규모의 축산범위

구분	규모	비고
젓소	3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소	30마리	
돼지	200마리	2.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한다.
산양	300마리	
면양	300마리	
토끼	5,000마리	
닭	10,000마리	
오리	10,000마리	

축산업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 농가부업규모소득금액 - 연간 12백만원

나. 축산업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계산

종합소득금액(축산업 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공제 내역

구분	금액	대상	구분	금액	대상	
본인공제	연간 100만원		추가공제	경로우대공제	연간 100만원 60세 이상 70세 미만	
배우자공제	연간 100만원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연간 150만원 70세 이상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직계존속 :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 지계비속 :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		장애인공제	연간 100만원	장애인 1인당
				부녀자공제	연간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시
			연금보험료공제	연간 50만원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축산업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2001년 12월 29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축산업이 중소기업대상업종에 포함되어 2002사업년도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게 되었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축산업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축산업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부칙 31조 2001년 12월 29일).

■ 축산업소득공제 : 소득발생한 사업년도와 이후 3사업년도 - 소득금액의 20% 공제

■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 감면비율

- 수도권안의 소기업 : 100분의 10

- 수도권외의 중소기업 : 100분의 15

• 소기업 : 상시종업원 10명 미만

• 수도권 :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지역 **양돈**